

改正된 圖書館法施行規則 全文

㉠ 문교부령 제570호

도서관법시행규칙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9년3월25일 문교부장관

도서관법시행규칙개정령

도서관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개정이유

도서관법시행령이 전문개정(1988. 8. 16. 대통령령 제12,506호)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사서자격증의 교부신청을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대학졸업예정자 및 사서자격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예정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함(제3조).

나. 사서자격교육기관은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설하는 교육기관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의 교과 및 이수학점등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이 매 5년마다 1회이상의 일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서 연수과정을 운영하도록 함(제10조).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서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증의 서식)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자격증의 교부신청)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교육기관의 사서자격교육과정 이수예정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문교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입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격증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교부신청자외의 자가 사서자격증교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그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재교부신청사유가 훼손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훼손된 자격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증의 기재사항정정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서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격증을 첨부하여 문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연구경력 인정기관) 영 별표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의 1급정사서 자격요건 제3호에서의 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제 7 조(사서자격교육기관의 지정) ①영 별표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의 1급정사서 자격요건 제4호에서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은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부설하는 사서자격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교육기관을 부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서자격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교육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교육과정) ①지정교육기관의 사서자격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교과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6시간 이상의 강의 또는 실습을 1학점으로 하되,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 9 조(교육과정 이수증 교부)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교육과정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서직원의 연수등)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이 매5년마다 1회이상 일반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연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은 사립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서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기간, 연수별 과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자료의 납본서식)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납본서는 별지 제9호서식, 도서관자료납본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납본보상청구) ①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가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본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납본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대상 자료의 조사, 납본자료의 수령 및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청구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부여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도서관등록신청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도서관 시설명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도서관폐관신고서)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자는 수수료 500원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교부신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재교부신청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신청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서관학강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학강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으로 본다.

[별 표]

사서자격교육과정의교과(제8조제1항관련)

자 격 종 별	필수과목	선택 과목
1 급 정 사 서	도서관평가론 비교도서관학 도서관정보협력체 제론 도서관시스템분석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 보학 석사·박사학위 과정에서 선택

2 급 정 사 서	도서관과 사회 장서개발론 자료조직론(II) 주제별 정보자료론 정보검색론 도서관경영론(II) 도서관자동화론	대학의 도서관학과 또 는 문헌정보학과 교육 과정에서 선택
준 사 서	도서관·정보학개론 도서관사 자료선택론 자료조직론(I) 비도서자료론 참고봉사론 도서관경영론(I)	전문대학의 도서관과 또는 문헌정보학과 교 육과정에서 선택

비고: 필수과목중 (I)의 내용은 기초과정, (II)의 내용은 심화과정을 다룬다.

原 稿 募 集

<도서관문화>誌는 600여 단체회원과 1,300여 개인회원의 대변지로서 보다 알차고 유익하게 꾸미고자 회원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내용: 가) 도서관학 및 정보기술의 학술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
나) 도서관계의 국내외소식, 회원人事소식
다) 도서관과 관계되는 수필 또는 수기
라) 기타

2. 보내실곳: 13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전화: 535-4868·5616

3. 기타: 가) 원고를 보내실 때 약력과 사진 1매("도서관문화"자료실 영구비치용)를 첨부바랍니다.

나)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稿料를 드립니다.

圖書館文化 편집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사 서 자 격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서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교 부 장 관

25256-24811일

88. 12. 23.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특급) 120g/m²)

[별지 제2호서식]

기관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신 발신 인
 제목 사서사격증 교부신청

본교 대학 과를 년 월 일 졸업하게 됨으로써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이 있는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사서사격증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학위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25256-04611일
 88. 12. 23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신 발신 ㉠
 제목 자서자격증 교부신청

본 사서자격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년 월 일 이수하게 됨으로써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이 있는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 사서자격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력(전공)	기소지 자 격	경 력 (년·월)	비 고

※주 : 비고란에는 도서관법시행령 별표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중 해당호를 기재한다.

25256-04711일
 88. 12. 2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서식]

사서자격교육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교육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
	개관예정일	
교육대상	자격종별및정원	<input type="checkbox"/> 1급정사서(정원: 명) <input type="checkbox"/> 2급정사서(정원: 명) <input type="checkbox"/> 준사서(정원: 명)
도서관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자격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 height: 3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문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교육에 관한 계획서 1통 (설립취지, 시설, 설비, 교수요원확보, 교육과정편성, 운영, 수지예산, 정관, 학습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5256-05111일

88. 12. 2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교육과정이수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과 정 :

교육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 수 학 점 :

위와 같이 도서관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기 관 장

25256-05211일

88. 12. 23.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 (특급) 120g/m²)

[별지 제9호서식의 1]

도서관자료납본서 (도서)

납본번호 제 호

연 번	국제표준 도서번호	서 명	저자명	권 차	판 차	출판사명	출 년 월 일	판 일	규 격	면수	정가	책수	보상청구여부	비 고

계 : 종 책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합니다.

년 월 일

주소 :

납본자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5256-05411일

88. 12. 23. 승인

268mm×190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별지 제9호서식의 2]

도서관자료납본서 (연속간행물)

납본번호: 제 호

연 번	국제표준 연속간행 물 번호	서 명	출판사명	출 년	판 일	권호통권 간	구 격	정 가	책 수	보상청구여부	비 고

계: 종 책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납본자

서명 또는 날인

성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5256-05611일

88. 12. 23. 승인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34g/m²)

[별지 제9호서식의 3]

도서관자료납본서 (비도서)

납본번호 : 제 호

연 번	표 제 명	제작자명	제작년월일	형태사항	질	정 가	점 수	보상청구여부	비 고

계 : 종 점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합니다.

년 월 일

주소:

납본자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5256-05811일

88.12.23.승인

268mm×190mm

(인쇄용지 (특급) 34g/m²)

[별지 제10호서식의 1]

도서관자료납본필증(도서관)

납본번호: 제 호

연 번	국제표준 도서번호	서 명	저자명	권 차	판 차	출판사명	출 년	판 일	규격	면수	정가	책수	보상청구여부	비 고

계: 중 책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 장

취급자 인

귀하

※취급자 날인이 없는 필증은 무효임.

25256-05511일

268mm×190mm

88.12.23.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의 2]

도서자료납본필증 (연속간행물)

납본번호 : 제 호

연 번	국제표준연속 간행물번호	서 명	출판사명	출판년월일	권호통권	간 별	규 격	정 가	책 수	보상청구 여 부	비 고

계 : 종 책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 장

취급자 인

귀하

※취급자 날인이 없는 필증은 무효임.

25256-05711일

88. 12. 23. 승인

268mm×190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 10호서식의 3]

도서관자료납본필증(비도서)

납본번호 : 제 호

연 번	표제명	제작자명	제작년월일	형태사항	질	정 가	점 수	보상청구여부	비 고

계 : 종 점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 1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하여 납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중 앙 도 서 관 장

취 급 자 인

귀하

※취급자 날인이 없는 필증은 무효임.

25259-05911일

268mm×190mm

88. 12. 23.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1호서식]

납본보상청구서

납본번호 제 호

자료명	종 수	수 량	총 액	보 상 액	비 고

도서관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한 자료에 대한 보상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청구인 1) 출판사 또는 제작사 :
 2) 주 소 :
 3) 전 화 :
 4) 주민등록번호(청구인) :
 5) 거래금융기관명 :
 6) 계좌번호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5256-06011 민
 88.12.2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3호서식]

도서관등록신청서	
설립자	성 명 (전화 :) 주 소
명 칭	
소재지	
도서관법 제24조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교육(구청)장 귀하	

25256-06311민
88. 12. 2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4호서식]

도서관시설명세			
도서관의종류			봉사대상인구 명
시설	부지	면적	m ² (평)
	건물	면적	m ² (평)
		용도별 면적	
	열람석	좌석수	석
		열람실별 좌석	
	기계·기구		
자료	도서	권	
	연속간행물	종	
	시청각자료	종	
	기타 자료		
직원	인원 명		직원 명
			직원 명

25256-06411민
88.12.23.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